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수급자격의 정기적 확인 등 〉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542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

I. 개요

1.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54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6. 26.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전제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미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나 급여 제공이 중지된 자가 다른 사회보장급여 또는 중지된 급여의 수급가능성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적시에 확인·안내받지 못하여 필요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맞춤형 급여 안내의 대상을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에 대한 급여자격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충족 사실을 안내하여 당사자가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청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급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주의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장기관의 장이 확인대상자(사회보장급여의 기수급자나 수급중지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확인대상자가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도록 하고, 안내를 받은 사람이 전자적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신청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u>받아</u>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이하 “맞춤형 급여 안내”라 한다)할 수 있다.	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① ----- ----- ----- <u>받거나 제2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u>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3(기수급자 및 수급탈락자에 대한 급여자격 확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확인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보장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자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확인대상자가 다른 사회보장급여 또는 중지된 급여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내를 받은 사람이 전자적 방법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신청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 중 이미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급자격 확인 대상 사회보장급여의 범위, 확인 주기 및 방법, 안내 절차, 조사 생략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22조의2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이하 “맞춤형 급여 안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맞춤형 급여 안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다. 「기초연금법」

라. 「장애인연금법」

마. 「장애인복지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가. 「장애인연금법」

나. 「기초연금법」

다. 「장애인복지법」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그 가구원(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능력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²⁾,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소득·재산,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등을 조사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

□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적시에 확인하거나 안내받지 못하여 필요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맞춤형 급여 안내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수급자와 수급중지자에 대해서도

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가능성 확인을 위한 조사의 범위와 방법은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급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및 중지, 조사, 안내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0조(수급자의 변동신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능력, 다른 급여의 수급이력 등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①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21조(사회보장급여의 변경·중지)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및 제20조에 따른 수급자의 변동신고에 따라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소득·재산 상태,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종류·지급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동으로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그 종류·지급방법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변동이 소득·재산 상태 등의 변동수준, 수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또는 중지는 서면(수급자의 동의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두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안내하고, 당사자가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청의사를 표시하면 사회보장급여의 지급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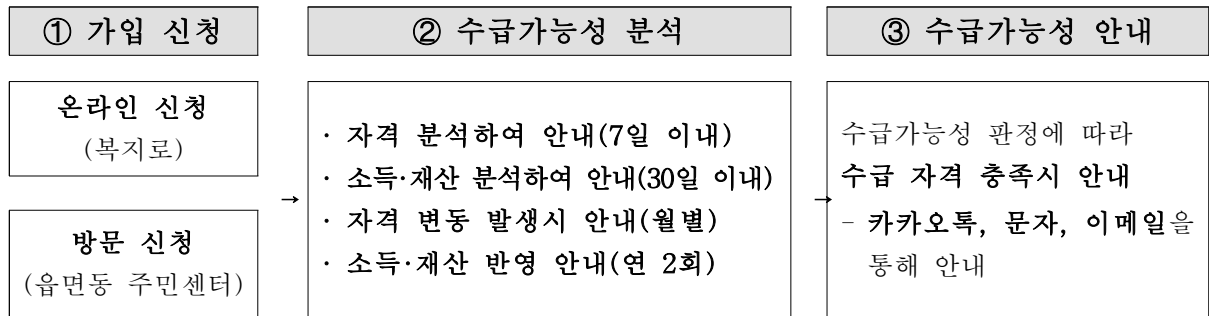
- 사회보장급여는 일반적으로 수급권자에게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급여 수급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보 부족이나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급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적시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권 보장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이 달성하려는 목적은 현행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보완·활용하는 방식으로도 상당 부분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맞춤형 급여 안내는 기수급자를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금융정보 제공 등에 동의한 경우 연 2회 정기적으로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수급가능성을 안내하고, 출산·사망 등 가구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시로 수급가능성을 안내하고 있어 개정안이 도입하려는 정기적 자격 확인 및 안내 기능과 상당 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음.

< 맞춤형 급여 안내 개요 >



자료: 보건복지부

□ 또한, 맞춤형 급여 안내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신청과 동의를 전제로 운영되며,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도 신청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가능성을 안내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확인대상자의 조사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출산·사망 등 가구원 변동사항뿐만 아니라 소득·재산 및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체계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효율적인 제도 운용을 위하여 현행법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의 대상과 운영방식을 보완하여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에 대한 정기적인 수급가능성 확인과 안내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관계 부처 의견

□ (보건복지부) 수급자 및 수급중지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자격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안내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수급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타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법 제 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에 수급탈락자 및 중지자도 수급가능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을 신속히 달성하는 것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498